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1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77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피 고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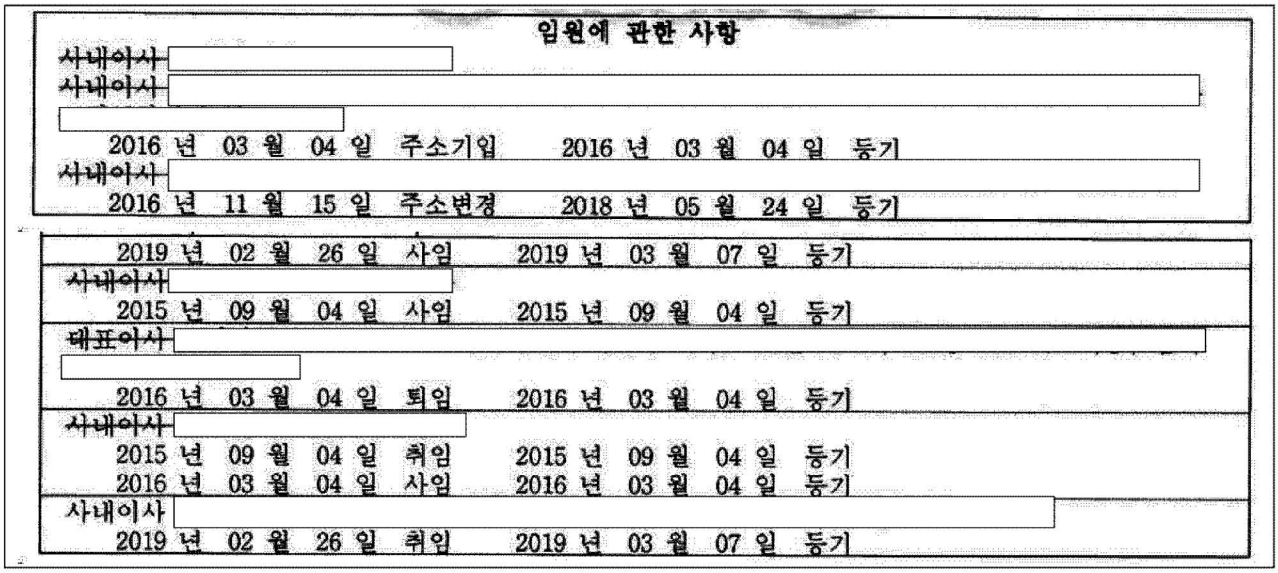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758,4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90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1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는 2019. 2. 26.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18.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사내이사		
	2016 년 03 월 04 일 주소기입	2016 년 03 월 04 일 등기
사내이사		
	2016 년 11 월 15 일 주소변경	2018 년 05 월 24 일 등기
	2019 년 02 월 26 일 사임	2019 년 03 월 07 일 등기
사내이사		
	2015 년 09 월 04 일 사임	2015 년 09 월 04 일 등기
대표이사		
	2016 년 03 월 04 일 퇴임	2016 년 03 월 04 일 등기
사내이사		
	2015 년 09 월 04 일 취임	2015 년 09 월 04 일 등기
	2016 년 03 월 04 일 사임	2016 년 03 월 04 일 등기
사내이사		
	2019 년 02 월 26 일 취임	2019 년 03 월 07 일 등기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 사건 회사 주식 전부(1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장부가액 1,179,120,0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3,758,4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904,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경위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자녀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역시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C은 2011.경부터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의류 관련 제조업을 하였으나 거래업체(F)의 고의 부도로 신용도가 하락하여 주거래처인 G이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E는 최종 부도가 났다.

2) 원고는 2013.경부터 C을 알게 되었고, 2014. 4.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동거를 하였다. 당시 C은 다른 이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원고가 C의 사업에 투자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C은 원래의 배우자와 이전부터 별거를 하였고, 큰딸인 D과의 갈등이 심각했지만 D, C, 원고는 같이 거주하였고, 2016. 4.부터 C은 자녀들과도 별거하였다.

3) C은 2014. 11.경 의류 관련 제조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에는 원고와 C이 부적절한 관계였기 때문에 C은 D에게 부탁하여 2014. 11.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와 주식 지분 100%도 D의 명의로 하였다. D은 당시 대학교 졸업을 앞둔 상태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였던 ○○ ○○구 H건물 I호, J호, K호, L호의 취득 자금 역시 원고가 지급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C과 원고가 맡아서 하였다.

D은 이 사건 회사에 단 한 번도 출근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의류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1

4)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시점은 D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할 무렵인 2019. 2. 26.경인바, 이때는 C이 원래의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이 문제되기 시작할 무렵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여 은행에 대출이 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D은 회사 보증채무와 조세채무로 인해 자신이 신용불량이 될 것을 염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빨리 가져가라고 독촉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원래 원고의 것이었기에 원고가 D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양수받았던 것이다.

나. 판단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명의자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원래 원고가 실질소유주였고 단지 D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원고가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명의수탁자 지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 D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있었을 당시 개인 명의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1

보증까지 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D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지위에 불과하였을지라도 그 실질소유주 내지 명의신탁자는 원고가 아닌 C이었을 가능성을 비롯하여, 원고와 C 사이에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계약과 주식회사의 공동경영과 이익분배에 관한 주주 사이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리를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이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르기 위해서는 동업약정 당사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사자 일부는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다른 일부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아 당사자들 모두가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의 경우, 주주가 되지 않은 동억약정 당사자들의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1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도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없다."), 원고가 D과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홀로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순하게 치환시켜 그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자인 D으로부터 단순 환원하였을 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